

'연명의료결정법' 세부 시행령 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 8월부터 시행

암 이외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 시행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7년 만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의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나 담당의 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등에만 환자의 의사로 보고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작동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며 사망에 입박한 상태를 말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

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3가지 종류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7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빼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리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주해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데 이어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올해 8월 4일,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

의료분야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추진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분야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의료사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사업, 위생사업,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흡연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특례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의료사업과 운수업을 제외했다.

개정안을 밸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의료 노동자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례업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례 규정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극단적 노동환경이 조장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형 차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숙 기자 ksung@

2007년 말초혈 이식을 받은 사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취임

질병관리본부(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7월 26일 임명됐다.

정은경 신임 본부장은 1965년 광주 출생으로 전남여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와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민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냈다.

정은경 본부장은 "마중한 책 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하는 물론 국가질병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해진 기자 hijoo@



으로 개선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마중한 책 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하는 물론 국가질병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해진 기자 hijoo@

인사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박정연 소장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소장에 박정연 의약팀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7월 31일자.

박정연 소장은 1984년 한국교통대(구 청주간호전문대학)를 졸업했다.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지역보건팀장, 예방의약팀장 등을 지내며 건강증진 및 보자보건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힘써왔다. 국가암 관리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정연 소장은 "보건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 사회 건강증진 및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8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박정연 소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주해진 기자 hijoo@

장기이식 범위에 '손·팔' '말초혈' 포함된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이식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8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이 추가된다.

올해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이식이 이뤄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예상 수요는 7021명 정도이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포함된다.

2007년 말초혈 이식을 받은 사

람 수가 끌수 이식을 추월한 아래 현재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말초혈 이식은 526명, 끌수 이식은 66명이 받았다.

장기이식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외의 나이·체중·차이 등을 삭제하고,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유급휴가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해진 기자 hijoo@

2017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2차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눈, 귀,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간, 담도, 혀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신경계 환자간호Ⅱ—특수질환 중심
	임상사례별 응급환자 간호	
개 발 비	8시간 기준 3,000만원(VAT 포함)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참가방법: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료인):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제출서류: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가점검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마감: 2017년 9월 1일(금), 이메일 도착분(서명捺인 기재)

●제출처: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1)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수재민 돋기 성금 모금 캠페인 8월 16일까지

대한간호협회는 이상 폭우로 인해 수재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돋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8월 16일까지 전개합니다.

간호사는 5,000원 이상, 간호대학생은 2,000원 이상을 오는 8월 16일(수)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홍보국(02-2260-2560~2)으로 문의.

■ 모금계좌: KEB하나은행 153-910011-75204
(예금주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30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간호사신문 (02) 2260-2571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4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부산시 (051) 253-3824 대구시 (053) 756-8485 인천시 (032) 441-2925 광주시 (062) 227-7561 대전시 (042) 535-0739 울산시 (052) 258-2311 경기도 (031) 252-0351 강원도 (033) 263-6417	충청북도 (043) 272-1573 충청남도 (041) 569-6348 전라북도 (063) 255-3390 전라남도 (061) 277-2202 경상북도 (053) 743-2721 경상남도 (055) 262-6006 제주도 (064) 747-3811 군 (042) 878-4580	병원 간호 사회 (02) 2261-1711 보건 간호 사회 (02) 525-7318 보건진료소장 회 (02) 2266-7677 보건 교 사 회 (02) 527-3360 마취 간호 사회 (010) 3103-0748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산업 간호 사회 (02) 716-9030 가정 간호 사회 (02) 2267-5688 정신 간호 사회 (02) 425-1271 노인 간호 사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효강령 준수합니다.			

간호인력 해결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함께하세요!!

꼭 챙기세요~